

## 기술사 교육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 -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에서 3년간 90시간 -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을 본격 시행한다.

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이들 기관을 통해 기술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전체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윤리, 국제계약제도, 클레임, 타당성분석 등 17개 과목의 기본교육과 60개 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요강좌(4시간)로 운영하며, 건설사업관리(180시간), 사업관리심화(40시간), 신규기술사연수(8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건설산업교육원은 건설분야 3개 기본교육과정(16시간)과 13개 전문교육과정(16시간), 건설기술호남교육원은 가치공학(VE)(40시간), 건설사업관리(16시간), 건설클레임(21시간) 등 3개 과정을 건설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사 교육을 이수하는 기술사에게 설계용역업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사교

육기관 추가지정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사교육훈련은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기술사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기술사로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었다.

교육훈련은 크게 수강교육과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되며, 수강교육은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사업관리, 국제계약 등 기본교육과 기술사 종목별 해당 전문교육을 각각 12시간씩 2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나머지 66시간은 자율학습활동으로 기술사 본인의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 활동을 훈련받는다.

현재 기술사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33,852명('07. 12 기준)이 배출되어 기술사사무소(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엔지니어링(5,000여명) 및 건설업체(7,000여명)등에서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 기술사 교육기관별 2008년도 교육훈련 안내 자료 별첨

### 참고 1

#### 2008 기술사교육기관 교육훈련 계획

□ 한국기술사회(017-706-1174)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회별)	비고
기본교육	수요강좌	4시간	43회	2,150명(50명)	17개 과목
	전국기술사대회	7시간	1회(45세션)	2,250명(50명)	
	한일합동심포지엄	7시간	1회	100명	
	신규기술사 연수세미나	8시간	2회	200명(100명)	
	건설사업관리(CM)	180시간	5회	250명(50명)	
	사업관리심화과정	40시간	2회	100명(50명)	
소 계				5,050명	
전문교육(수요강좌)		4시간	89회	4,450명(50명)	60개 과목
합 계				9,500명	

## □ 건설산업교육원(010-2526-3142)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회별)	비 고
건설 분야 기본과정	16시간	8회	480명(60명)	3개 과정
전문과정(토목, 건축, 기타)	16시간	29회	1,450명(50명)	13개 과정
합 계			1,930명	

## □ 건설기술호남교육원(017-624-7424)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회별)	비 고
가치공학(VE) 과정	40시간	4회	120명(30명)	기본교육
건설사업관리(CM) 과정	16시간	6회	240명(40명)	?
건설클레임과정	21시간	1회	50명	?
합 계			410명	

## 참고 2

###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 개요

#### □ 교육 대상 및 이수학점(인정기준)

- 1) 교육훈련 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
  - ※ 교육면제 대상 : ①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 ②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교육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사
- 2) 이수학점 : 매 3년마다 90학점 이수
  - 3년 이상 기술사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 이수
- 3)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 90학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교육 각각 12학점 이상 필수
- 4) 교육훈련 미 이수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술사법 제22조)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 교육훈련의 종류

- 1)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2) 자율학습활동
  -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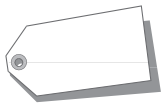
참고 3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구분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수강교육	(A01) 교육기관교육	(A0101)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5~20 1	1건 수강시간	90
	(A02) 법정직무교육	(A0201)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시간	60
	(A03) 대학전공교육	(A0301)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10	취득학점	60
	(A04) 그 밖의 수강교육	(A0401)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0.6	수강시간	18
자율학습활동	(B01)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	(B01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10~60	1편	60
		(B0102)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10~50	1편	48
		(B010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을 포함한다)		50	1편	60
	(B02) 연수 등의 강사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 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2	강의시간	60
	(B03) 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1	참석시간	12
	(B04) 기술지도	(B0401)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		3	지도시간	36
	(B0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B0501)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10~30	1편	30
		(B05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		30	1회	30
		(B050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60	1건	60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B060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1	수강시간	60
		(B060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1	1건	12
		(B0603) 현장 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0.6	참여시간	18
	(B07) 업무활동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2	참여기간 (1개월)	36
	(B08) 그 밖의 자율학습활동	(B080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1	투여시간	30
		(B08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20	1회	24
		(B08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20	1회	24
(B080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당하는 것			0.6	1회	18	

비고:

-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 법정직무교육, 그 밖의 수강교육, 심의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발행한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 기간 안에 해당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과 저술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율학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건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나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업무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은 참여기간과 업무활동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 학회, 심포지엄,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건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 “2008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확정 -

- 건설교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등 6개 기관별로 분산관리하던 **건설기술자 경력정보를 통합관리** 하기로 하고, 금년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각 기관간의 경력정보가 상호 확인되지 않아 발생하는 **건설기술자의 불편과 자료의 중복성, 신뢰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009년까지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건설기술자가 개인의 경력정보를 **등록한 경력관리기관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 조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 외에도 금년에 추진할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76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본 시행계획은 작년 말에 수립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의 **1차년도 세부 실천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전문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건설 분야별·프로세스별 핵심 역량모델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건설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전환 비율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표준품셈**도 정기적으로 **정비**
  - \*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2회 공고
-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 at Risk)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CM) 적용사례 분석·홍보** 등 CM 활성화 방안을 마련
  - \*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이전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의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 공공시설물에 예방적 유지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장수명화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교량의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분석모델을 개발**
  - ※ 본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게시되어 있다.
- 건교부는 본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현황

